



**제 542호 2023. 1. 26(목)**

**규 칙**

제755호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4358
제756호	김해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	34359
제757호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34365
제758호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34366

**고 시**

제2023-27호	김해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소로3-104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 고시 .....	34367
-----------	---------------------------------------------------	-------

**알 림**

김해시 공직자 윤리위원회공고 제2023-1호	재산 등록사항 공개 .....	34369
--------------------------------	------------------	-------

제598회 김해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3년 1월 26일

김해시 규칙 제755호

###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공보관”을 “소통공보관”으로, “보건소”를 “김해시보건소(김해시서부보건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민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일자리경제국”을 “혁신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을 “시민안전국”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3. 1. 1. 시행)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이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 주요내용

변경된 부서 명칭 반영(제5조)

“공보관 ⇒ 소통공보관, 보건소 ⇒ 김해시보건소(김해시서부보건소를 포함한다), 시민복지국 ⇒ 복지국, 일자리경제국 ⇒ 혁신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 시민안전국”

제598회 김해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김해시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홍태용

2023년 1월 26일

김해시 규칙 제756호

### 김해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② 시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출장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허가 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출장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 이전에 김해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해당 심사의 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가 속한 국의 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감사, 예산, 회계, 시정홍보,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가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외부위원 1인 이상을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5조제2항 후단의 심사위원 제외사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해 교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얻은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3조(항공마일리지의 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등급 상향 등을 통한 항공마일리지 활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은 출국 전까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전에 입력할 수 없는 때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별표]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국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확 인 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20 . . . ~ 20 . . . (일간)						
출장국							
방문기관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계						

###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재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 사 의 결 서

심사일시		20년 월 일				
심 의 안 건	제목	공무국외출장 심의				
	개 요	○ 출장국 및 출장지 :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 . . ( ) ~ . . . ( ) < 박 일 >				
		○ 출 장 자 :				
의결사항						
직		성 명	서 명	직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예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 IV.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제598회 김해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김해시장홍태웅

2023년 1월 26일

김해시 규칙 제757호

###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김해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규칙 제22조제3항”을 “훈령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으로, “된”을 “정한”으로 한다.

별표 1의 지출원의 시의회란 중 “의정업무담당팀장”을 “총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
1. 농업기술센터 2. 김해시보건소 3. 김해서부보건소 4. 문화관광사업소 5. 상하수도사업소 6. 인재육성사업소 7. 차량등록사업소 8. 장유출장소 9. 대성동고분박물관 10. 1읍·6면·12동	지출원이 없는 관서

####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개정으로 해당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된 우리 시 규칙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법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함

#### ◇ 주요내용

- 제명 변경(제명)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김해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인용 조문 등 변경(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시의회 지출원을 총무담당팀으로 변경(별표 1)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에 김해시서부보건소를 추가(별표 2)

제598회 김해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3년 1월 26일

김해시 규칙 제758호

###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위반행위란 중 라목의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하고, 마목의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칙 개정

#### ◇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 변경(별표)

제11조제2항, 제11조제4항 → 제11조제4항, 제11조제5항으로 각각 수정

## 김해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소로3-104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소로3-104호선 외 1개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67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소로3-104호선 외 1개소) 사업
  - 사업의 명칭 :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면적(㎡)	길이(m)	폭원(m)	면적(㎡)	
주차장	-	-	2,440	-	-	2,440	21.10.29 최초결정
소로3-104호선	230	6~8	2,169.0	57	1~5	133	84.09.24 최초결정
소로3-105호선	95	6	600.6	4.5	1~1.4	4.0	84.09.24 최초결정

※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	주차장	도로
면적(㎡)	2,577	2,440	13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교통혁신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참조
7. 실시계획 신청사유
  -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인근지역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양질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함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김해시 삼방동	674-1	공	10,713.1	2,577	김해시		
소 계				10,713.1	2,577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3-1호

**재산 등록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1월 일

**김 해 시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

소속	(재)김해시복지재단		직위	대표이사	성명	최 정 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649,994		
본인	답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6-2번지 1,344.00㎡ 중 336.00㎡		254,000 (254,000)		
본인	답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90-5번지 1,818.90㎡ 중 606.30㎡		124,660 (124,660)		
본인	답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 534-4번지 1,085.00㎡		22,000 (22,000)		
배우자	답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90-5번지 1,818.90㎡ 중 1,212.60㎡		249,334 (249,334)		
▶ 건물(소계)				579,999		
본인	아파트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효성빌라 건물 84.88㎡ 중 84.87㎡		97,000 (97,000)		
본인	아파트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동신아파트 건물 49.72㎡		76,000 (76,000)		
본인	사무실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건물 266.40㎡		301,999 (301,999)		
배우자	아파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부산대역삼정그린코아 마운틴동 건물 19.57㎡		105,000 (105,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7,210		

본인	자동차	2018년식 그랜저 배기량(2,199cc)	210 (210)	
본인	자동차	2012년식 쏘렌토 배기량(1,995cc)	17,000 (17,000)	
<b>▶ 예금(소계)</b>			<b>143,214</b>	
본인		(주)KB손해보험 31,274, 농협은행 32,778, 산림조합중앙회 3,641, 삼성증권 17, 새마을금고 205	67,915	
배우자		농협은행 12,391, 농협중앙회 1,564, 산림조합중앙회 562, 새마을금고 4,718, 신한은행 3, 흥국생명보험 56,061	75,299	
<b>▶ 증권(소계)</b>			<b>16,399</b>	
본인	상장주식	NAVER 2주, 누보 325주, 대원산업 110주, 미래에셋증권2우B 22주, 삼성엔지니어링 10주, 삼성전자 210주, 소니드 3주, 시노텍스 27주, 신성통상 13주, 아시아나항공 30주, 엘오티베콤 50주, 우리기술 180주, 원익큐브 130주, 유니셀 63주, 체리부로 2주, 한국전력 55주, 현대이지웰 42주	16,399	
<b>▶ 채권(소계)</b>			<b>580,000</b>	
본인		사인간채권	580,000	
<b>▶ 채무(소계)</b>			<b>829,146</b>	
본인		사인간채무	80,000	
본인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279,259, 산림조합중앙회 410,000	689,259	
본인	건물임대채무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부산대역삼정그린코아 임대보증금	1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동신아파트 임대보증금	10,000	
배우자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19,887, 흥국생명보험 20,000	39,887	
<b>▶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b>			<b>-</b>	
모		고지거부	0	타인부양
장남		고지거부	0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0	독립생계유지
<b>총 계</b>			<b>1,157,670</b>	